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일반용역”이란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주차장관리용역 등을 총칭한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p>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p> <p>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지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지 최초결산서로 본다.</p> <p>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p>	<p>(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p>	<p>6. .... (현행과 같음) .....</p>	<p>조문정리</p>
<p>제4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lt;별표1&gt;, &lt;별표2&gt;와 같다.</p> <p>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lt;별표3&gt;에 정한 바를 따른다.</p>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p>제5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p>	(현행과 같음)	
<p>제6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p>	(현행과 같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p>	(현행과 같음)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p>제7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3월 20일 이후 시행한다.</p> <p>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4년 3월 2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6년 4월 11일 이후 시행한다.</p> <p>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6년 4월 1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일 변경</p>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 별표 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

『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 등』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40	입찰자가 선택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1.5) ○ 신규 채용(0.3) ○ 모범 납세자 등 (1)	+7.3	수행능 력배점 한도 범위내 에서 합산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0.5) ○ 지역업체(0.5)		
	일자리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5) · 임금체불, 원·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0.5)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0.5)	-6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현행과 같음)

## 현행규정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40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40	
	2) 75%이상 - 100%미만	36	
	3) 50%이상 - 75%미만	32	
	4) 25%이상 - 50%미만	28	
	5) 0%이상 - 25%미만	24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29.0</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28.0</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b>27.0</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개정안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29.4</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28.8</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b>28.2</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사 유

**신용평가  
평점변경**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	-----	-----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8.0	
	2) 100%이상 - 200%미만	7.0	
	3) 200%이상 - 300%미만	5.9	
	4) 300%이상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8.0	
	2) 100%이상 - 150%미만	7.0	
	3) 50%이상 - 100%미만	5.9	
	4) 50%미만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6.0	
	2) 100%이상 - 200%미만	5.2	
	3) 50%이상 - 100%미만	4.4	
	4) 50%미만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 [(기초총자 산+기말총자산)/2] }	1) 200%이상	8.0	
	2) 150%이상 - 200%미만	7.0	
	3) 100%이상 - 150%미만	5.9	
	4) 100%미만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인도 : +10.3점~-6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찰 가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사 유

## 현행규정

## 개정안

## 사 유

###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용역

『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 등』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20	입찰자가 선택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1.5) ○ 신규 채용(0.3) ○ 모범 납세자 등 (1)	+7.3	수행능 력배점 한도 범위내 에서 합산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0.5) ○ 지역업체(0.5)		
	일자리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1점)	1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5) · 임금체불, 원·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0.5)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0.5)	-6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현행과 같음)

## 현행규정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20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0	
	2) 75%이상 - 100%미만	18	
	3) 50%이상 - 75%미만	16	
	4) 25%이상 - 50%미만	14	
	5) 0%이상 - 25%미만	12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29.0</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28.0</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b>27.0</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개정안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29.4</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28.8</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b>28.2</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사 유

**신용평가  
평점변경**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	-----	-----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8.0	
	2) 100%이상 - 200%미만	7.0	
	3) 200%이상 - 300%미만	5.9	
	4) 300%이상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8.0	
	2) 100%이상 - 150%미만	7.0	
	3) 50%이상 - 100%미만	5.9	
	4) 50%미만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6.0	
	2) 100%이상 - 200%미만	5.2	
	3) 50%이상 - 100%미만	4.4	
	4) 50%미만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 [(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	1) 200%이상	8.0	
	2) 150%이상 - 200%미만	7.0	
	3) 100%이상 - 150%미만	5.9	
	4) 100%미만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 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인도 : +10.3점~-6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찰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50 - 2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b>2.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b> 『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 등』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5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5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5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1.5) ○ 신규 채용(0.3) ○ 모범 납세자 등 (1)	+7.3	수행능 력배점 한도 범위내 에서 합산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0.5) ○ 지역업체(0.5)					
	일자리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1점)	1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5) · 임금체불, 원· 하도급자의공사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0.5)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0.5)	-6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현행과 같음)		

## 현행규정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5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5.0	
	2) 75%이상 - 100%미만	4.5	
	3) 50%이상 - 75%미만	4.0	
	4) 25%이상 - 50%미만	3.5	
	5) 0%이상 - 25%미만	3.0	

나. 경영상태 : 25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25.0</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24.0</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b>23.0</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0
없음	없음	없음	0.0

## 개정안

(현행과 같음)

나. 경영상태 : 25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24.5</b>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24.0</b>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b>23.5</b>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0
없음	없음	없음	0.0

## 사 유

**신용평가  
평점변경**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	-----	-----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7.0	
	2) 100%이상 - 200%미만	6.4	
	3) 200%이상 - 300%미만	5.8	
	4) 300%이상	5.2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7.0	
	2) 100%이상 - 150%미만	6.4	
	3) 50%이상 - 100%미만	5.8	
	4) 50%미만	5.2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5.0	
	2) 100%이상 - 200%미만	4.6	
	3) 50%이상 - 100%미만	4.2	
	4) 50%미만	3.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 [(기초총자산+기 말총자산)/2] }	1) 200%이상	6.0	
	2) 150%이상 - 200%미만	5.5	
	3) 100%이상 - 150%미만	5.0	
	4) 100%미만	4.5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text{점수} = (\text{재무비율평가 점수} \times 0.3) + (\text{신용평가} \times 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 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한다.

다. 신인도 : +10.3점~-6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찰 가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7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b>2.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b> 『 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관리 등』					(현행과 같음)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1.5) ○ 신규 채용(0.3) ○ 모범 납세자 등 (1)	+7.3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 서 합산 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0.5) ○ 지역업체(0.5)					
	일자리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1점)	1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5인이상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5) · 임금체불,원· 하도급자의공사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0.5)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0.5)	-6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평점변경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없음	없음	없음	0.0	
-재무비율				(현행과 같음)				
심사항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5.0						
	2) 100%이상 - 200%미만	4.4						
	3) 200%이상 - 300%미만	3.7						
	4) 300%이상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5.0						
	2) 75%이상 - 100%미만	4.5						
	3) 50%이상 - 75%미만	4.0						
	4) 25%이상 - 50%미만	3.5						
	5) 0%이상 - 25%미만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 \times 0.3) + (신용평가 \times 0.7)$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p>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p> <p>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p> <p>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p> <p>다. 신인도 : +10.3점~-6점</p> <p>※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lt;별표 2&gt;에 따른다.</p> <p>라. 입찰가격 : 90점</p> <table border="1" data-bbox="141 743 1043 818"> <thead> <tr> <th data-bbox="141 743 638 783">심사항목</th> <th data-bbox="638 743 1043 783">등급 및 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41 783 638 818">입찰가격</td> <td data-bbox="638 783 1043 818">※ 평점산식 : 아래</td> </tr> </tbody> </table> <p>※ 입찰가격 평점산식</p> <p>▶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p> <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p> <p>▶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p> <p>-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p> <p>▶     는 절댓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p> <p>▶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p>	심사항목	등급 및 배점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p>(현행과 같음)</p>	
심사항목	등급 및 배점					
입찰가격	※ 평점산식 : 아래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	-----	-----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	0.5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 여성고용 촉진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0.3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0.5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	1	
○ 장애인 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6인 이상		0.5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3인 이상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 등	1.5	1.5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0.8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1.5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0.8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8		
E. 신규 채용	0.3	0.3	
○ 신규 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인 이상		0.15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수가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인 이상	0.15		

(현행과 같음)

사 유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F.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제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제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0.5 0.5	약자 및 우수기업	F.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제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제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0.5 0.5	조문정리		
	중소기업	G.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25 0.3 0.3 0.15	중소기업	G.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25 0.3 0.3 0.15
중소기업		H. 지역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25 0.3 0.3 0.15	지역업체		H. 지역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25 0.3 0.3 0.15
		일자리창출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1점	1			1		1	
		고용안정	J.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 1명당 0.4점, 최고 5인이상 2점	2			2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체불, 최저임금미준수 등으로 고용노동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되어 사실확인된 업체(-5)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0.5 -0.5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체불, 최저임금미준수 등으로 고용노동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신고되어 사실확인된 업체(-5)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0.5 -0.5

## 현행규정

- (주) ①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가. “B”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 다. 동일인물이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             |    |    |    |
|-------------|----|----|----|
| 구 분         | 5월 | 6월 | 7월 |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9  | 14 |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 9.333333 = 10$ 명
- ④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와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⑥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안

(현행과 같음)

## 사 유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p>⑧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p> <p>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p> <p>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p> <p>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p> <p>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p> <p>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p>	<p>(현행과 같음)</p>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용역 분야별 평가방법</p> <p>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p> <p>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p> <p>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p> <p>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p> <p>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p> <p>2. 당해 용역 이행실적평가방법</p> <p>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p> <p>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p> <p>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p> <p>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p> <p>3. 경영상태 평가방법</p> <p>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p>	<p>(현행과 같음)</p>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적격심사신청서</b></p> <p>입찰 등록 번호 :  용역명 :  입찰일시 :</p> <p>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 .</p> <p>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p> <p>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u>경리관 귀하</u></p>	<p>〈별지 제1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b>적격심사신청서</b></p> <p>입찰 등록 번호 :  용역명 :  입찰일시 :</p> <p>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 .</p> <p>입찰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p> <p>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u>재무관 귀하</u></p>	<b>조문정리</b>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b>접수증</b></p> <p>1. 입찰등록번호                      2. 용역명 :  3. 회사명                                4. 제출자 :</p> <p>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경리관</u></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b>접수증</b></p> <p>1. 입찰등록번호                      2. 용역명 :  3. 회사명                                4. 제출자 :</p> <p>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재무관</u></p>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업체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현행과 같음)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현행과 같음)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현행규정	개정안	사 유
<p>(별지 제4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각 서</p> <p>용역명 :</p> <p>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아 래</p> <p>①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p> <p>② 최근 1년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p> <p>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p> <p>④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p> <p>(발주기관) 귀하</p>	<p>(현행과 같음)</p>	

## 현행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100만원	2011. 8. 1 ~ 2011.12.31
1명	120만원	2011. 8. 1 ~ 2011.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2명	100만원	2011. 8. 1 ~ 2011.12.31
1명	120만원	2011. 8. 1 ~ 2011.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사 유

현행규정

개정안

사유

(별지 제6호 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제1호서 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제2호서 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 기관 세무사	이 기준제3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제4호.제5 호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제3로서 식 참조

(현행과 같음)